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38호 2010. 1. 13.(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
규칙 ----- 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3호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2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8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3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8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4호 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8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1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변경 고시안 의견제출 공고 ----- 9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9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애인체육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3조제2항의 장애인 우수 선수(이하 “선수”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여 임용한다.

1.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등록된 자
3. 기타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선수 해임)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4.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 ① 선수의 관리 및 훈련은 장애인체육 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 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또는 기타 관련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②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선수의 복무)** ① 선수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훈련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수관리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연간 20일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④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 ⑤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 ⑥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선수 경비 지급)** ① 선수의 훈련 지원 및 선전 장려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훈련복 및 장비,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은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의료보상)** ①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임용,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수 등) 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단,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

②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연봉은 별표 3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
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3.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① 선수가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선수단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 별 휴 가 일 수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1위	개인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세계대회	10	7	5

[별표 2]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전)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	선수당 80,000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각 종목별 공인된 국제대회 등)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500,000	400,000	300,000	
전국장애인체전	300,000	200,000	150,000	
전국규모대회	200,000	150,000	100,000	

[별표 3]

점수산정기준표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 선수단 근무경력(우리구 입단) - 3년이상 : 10 - 2년이상 3년미만 : 8 - 1년이상 2년미만 : 6 - 1년미만 : 4	
경기력	70	○ 최근 1년간 각종대회 입상경력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 2위 30, 3위 20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 2위 20, 3위 15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 2위 15, 3위 13	
복무등	20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별표 4]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A(90점이상)	B(80점이상)	C(80점미만)	비 고
선 수	20,400,000 (월1,530,000)	18,000,000 (월 1,350,000)	16,800,000 (월 1,260,000)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 신청서

단 체 명 칭		
신 청 자	법인(단체)명	
	주 소	
	성명(대표자)	
법인(단체)	설립근거	
법인(단체)	설립목적	
단 체 운 영 방 법		
기 타 사 항		
<p>「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법인(단체)장 직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우수장애인 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이프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우수 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 기 간 :
- 장 소 :
- 사 유 :
- 훈련 또는 출전자 :
- 현지숙소 및 연락처 :
- 세부일정별 계획

시간대별 훈련(출전)사항	일자별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 퇴직금 : 원		○ 퇴직금	
월평균 보수		산출액		전환금 : 원	
				납부액	

결	담당자	체육진흥 담당	문화관광체육 과장	주민생활지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재			전 결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퇴직일자	접수일자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다올신탁 대표이사 이병철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0블록 1~5로트
 - 나. 대지면적 : 47,891.00m²
 - 다. 연 면 적 : 118,672.6777m²
 - 라. 사 업 비 : 273,978,392,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10개동 588세대
4. 사업기간 : 2010.01. ~ 2012.01.
5.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가. 사업주체 : 이토건설(주), 이토씨앤디(주) ⇒ (주)다올신탁
 - 나. 단위세대 평면변경 : 개구부, 바닥드레인 위치, 욕실형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01. 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경서지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343,482.4	증)7.5	343,489.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서지구	· 면적변경 : 343,482.4㎡ → 343,489.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43,482.4	증) 7.5	343,489.9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835.5	감)109.1	267,726.4	77.94%	
제3종일반주거지역	75,646.9	증)116.6	75,763.5	22.0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변경 : 267,835.5㎡ → 267,726.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변경 : 75,646.9㎡ → 75,763.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고도지구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서 지구	최고 고도 지구	서구 경서동 260번지 일원	5층 이하	168,376.5	증)1,013.6	169,390.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고도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최고고도지구	· 면적변경 : 168,376.5㎡ → 169,390.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결정 총괄표

구분	유형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7	9,147	84,104.7	1	646	6,760.2	27	5,888	57,115.0	9	2,613	20,229.5
	변경	37	9,147	84,101.2	1	646	5,382.6	27	5,888	57,422.9	9	2,613	21,295.7
	증감	-	-	감)3.5	-	-	감)1,377.6	-	-	증)307.9	-	-	증)1,066.2
광로	기정	1	560	9,956.6	-	-	-	1	560	9,956.6	-	-	-
	변경	1	560	10,003.4	-	-	-	1	560	10,003.4	-	-	-
	증감	-	-	증)46.8	-	-	-	-	-	증)46.8	-	-	-
중로	기정	3	1,994	22,710.5	-	-	-	1	520	8,566.7	2	1,474	14,143.8
	변경	3	1,994	23,914.3	-	-	-	1	520	8,619.5	2	1,474	15,294.8
	증감	-	-	증)1,203.8	-	-	-	-	-	증)52.8	-	-	증)1,151
소로	기정	33	6,593	51,437.6	1	646	6,760.2	25	4,808	38,591.7	7	1,139	6,085.7
	변경	33	6,593	50,183.5	1	646	5,382.6	25	4,808	38,800.0	7	1,139	6,000.9
	증감	-	-	감)1,254.1	-	-	감)1,377.6	-	-	증)208.3	-	-	감)84.8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개 노선)	· 면적변경 : 9,956.6㎡ → 10,003.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중로 (3개 노선)	· 면적변경 : 22,710.5㎡ → 23,914.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소로(33개 노선)	· 면적변경 : 51,437.6㎡ → 50,183.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도로	560 (11,620)	경서산296-4 남측지구계	경서438-26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84	18	집산 도로	520 (1,900)	광로2-4	경서산122 동측지구계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3	143	12-15	"	604	중로3-144	소로3-6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144	12-18	"	870	광로3-13	소로2-2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소로	1	2	10-12	국지 도로	646	중로2-184	중로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	8	"	194	중로3-144	소로3-1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환지계획 수립으로 인한 선형변경 서구고시 '04-9 (04.2.19)
기정	"	2	4	8	"	53	중로3-144	소로2-7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7	8	"	150	중로3-144	소로2-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1	8	"	124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3	8	"	146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5	8	"	137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소로	2	16	8	"	353	소로2-11	소로2-33	"		인고 제93-128호 ('93. 9.28)	소로3-3호선 폐지후 폭원 확장 및 선형 일치 서구고시 '04-9 (2004.2.19)
기정	"	2	17	8	"	259	소로2-11	소로2-15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0	8	"	196	중로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1	8	"	202	중로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2	8	"	200	중로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3	8	"	558	중로2-184	중로 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주) ()는 지구 외 연장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	2	24	8	국지 도로	193	소로 2-36	소로 2-32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5	8	"	466	소로 2-20	소로 2-24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6	8	"	448	소로 2-20	소로 2-24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7	8	"	88	소로 2-21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8	8	"	92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9	8	"	95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0	8	"	94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5	8	"	31	소로 2-25	소로 2-26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31	8	"	92	소로 1-2	소로 2-32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2	8	"	242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3	8	"	224	중로 3-143	중로 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소로	2	34	8	특수 도로	140	중로 3-143	소로 3-2	보행자 전 용 도로		인고 제2002-293호 (2002.12.17)	
기정	"	2	36	8	"	31	중로 3-144	소로 2-24	"		인고 제2002-293호 (2002.12.17)	
기정	"	3	1	6	국지 도로	362	중로2-184	소로2-2	일반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2	6	"	334	중로2-184	경서 321 남서측지구계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4	4	특수 도로	191	중로3-144	소로3-1	보행자 전 용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5	4	"	56	소로2-27	소로2-20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6	4	국지 도로	126	중로3-143	중로3-144	일반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7	4	특수 도로	39	중로3-143	중로3-144	보행자 전 용 도로		서구 고시 '04-9 (2004.2.19)	
기정	"	3	8	4	"	31	소로2-16	소로2-33	"		서구 고시 '04-9 (2004.2.19)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104.1	-	2,104.1		
기정	1	2호 주차장	주차장	경서동 131-1	2,104.1	-	2,104.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 개소	11,935.5	증)13.7	11,949.2		
변경	1	1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산136 (4BL 1LT)	2,764.8	증)14.9	2,779.7	인고 제2001-51호 (2001.4.10)	
변경	2	2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산118-10 (32BL 1LT)	2,728.0	감) 0.2	2,727.8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3	3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산127 (52BL 1LT)	4,205.0	-	4,205.0	인고 제93-128호 ('93. 9.28)	
변경	4	4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240-1 (40BL 1LT)	2,237.7	감) 1.0	2,236.7	인고 제93-128호 ('93. 9.28)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호 공원	· 면적변경 : 2,764.8㎡ → 2,779.7㎡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호 공원	· 면적변경 : 2,728.0㎡ → 2,727.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4호 공원	· 면적변경 : 2,237.7㎡ → 2,236.7㎡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라.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9,108.3 (12,900)	증)20.7	9,129.0 (12,900)		
변경	1	경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경서동 288-3일원	9,108.3 (12,900)	증)20.7	9,129.0 (12,900)	인고 제98-33호 ('98. 2. 5)	

주) ()은 지구 외 면적 포함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서초등학교	· 면적변경 : 9,108.3㎡ → 9,129.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22.2	-	322.2		
기정	1	파출소	공공 청사	경서동 산124 (25BL 15LT)	322.2	-	322.2	인고 제93-128호 ('93. 9.28)	

바.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86.1	-	186.1		
기정	1	하수도	하수도	경서동 산134 (4BL)	186.1	-	186.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A-LINE	하수도	하수도	서구 경서동 1BL 2LT	서구 검암동 438-27	인천국제 컨트리클럽	30 (390)	85.3 (1,653)	인고 제2003-212호 (2003.11.17)	

주) ()은 지구외 면적 포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규제사항

■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함.

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2.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분할된 일단의 필지

■ 대지의 분할, 합병

기존대지의 분할 및 합병은 획지의 분할·합병 신청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합병되는 대지면적의 최소 및 최대한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다만 획지 분할가능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시 건축은 분할된 대지가 접하는 인접 필지의 건축규제사항 중 가장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

지역		최소 분할규모	최대 합병규모
아파트 용지 (A용도 적용지역)		대지분할·합병 불가	
일반 용지	B용도 적용지역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C용도 적용지역	2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기타용지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등)		대지분할·합병 불가	

2) 권장사항

■ 공동개발

- ① 공동개발이 표시된 대지의 건축물은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함.
- ② 공동개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건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의 주정차 금지구간 설정 규정에 의해 주차 통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필지
- ③ 공동개발이 지정된 일단의 필지는 지침에 표시된 건축규제 사항을 적용하며 공동개발의 미준수 또는 해제, 조정에 의해 공동개발이 해제되는 개별필지의 건축은 당해필지가 접하고 있는 인접필지의 건축 규제사항 중 가장 강화된 규정을 적용

- ④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이외의 필지라도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은 공동개발 대상 개별 필지의 건축규제 사항 중 가장 완화된 규정을 적용
- ⑤ 제2항 1호 지침의 준수시 【별표 12】 건축기준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에 의해 보상이 주어진다. 단, 공동주택(아파트용지)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의 건축시 공동개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계획안과 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의거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A)

가구 번호	가구면적 (㎡)	기 정		비 고
		위치	면적(㎡)	
2	15,039.6	1	8,725.8	2가구 2, 3획지와 공동개발
		2	4,137.6	2가구 1, 3획지와 공동개발
		3	2,176.2	2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6	29,460.6	1	20,844.1	6가구 2, 3획지와 공동개발
		2	7,916.5	6가구 1, 3획지와 공동개발
		3	700.0	6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14	28,309.3	1	3,183.9	14가구 2, 5획지와 공동개발
		2	23,902.3	14가구 1, 5획지와 공동개발
		5	1,223.1	14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단) 2, 6, 14가구의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별 단독개발시 건축물 높이가 16층 이하, 용적을 190% 이하로 제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변 경		비 고
		위치	면적(㎡)	
2	15,039.6	1	8,725.6	2가구 2, 3획지와 공동개발
		2	4,137.8	2가구 1, 3획지와 공동개발
		3	2,176.2	2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6	29,449.3	1	20,837.9	6가구 2, 3획지와 공동개발
		2	7,911.5	6가구 1, 3획지와 공동개발
		3	699.9	6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14	28,308.8	1	3,185.8	14가구 2, 5획지와 공동개발
		2	23,900.2	14가구 1, 5획지와 공동개발
		5	1,222.8	14가구 1, 2획지와 공동개발

단) 2, 6, 14가구의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별 단독개발시 건축물 높이가 16층 이하, 용적을 190% 이하로 제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 공동주택(아파트)용지(A)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번호	획지번호		
2	1	· 면적변경 : 8,725.8㎡ → 8,725.6㎡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 면적변경 : 4,137.6㎡ → 4,137.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1	· 면적변경 : 20,844.1㎡ → 20,837.9㎡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 면적변경 : 7,916.5㎡ → 7,911.5㎡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700.0㎡ → 699.9㎡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4	1	· 면적변경 : 3,183.9㎡ → 3,185.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 면적변경 : 23,902.3㎡ → 23,900.2㎡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1,223.1㎡ → 1,222.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일반용지 (B)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8	3,680.1	1	1,269.0		8	3,680.4	1	1,269.3	획지분할가능선
		2	349.7				2	349.8	
		3	866.5				3	866.5	
		5	379.3				5	379.2	
		6-1	815.6				6-1	815.6	
11	1,822.8	1	473.2		11	1,822.9	1	473.3	
		2	326.0				2	326.0	
		3	398.4				3	398.4	
		4	144.8				4	144.8	
		5	480.4				5	480.4	
22	4,245.1	1	510.8		22	4,256.9	1	513.7	
		2	520.2				2	520.2	
		3	1,383.8				3	1,387.8	
		4	1,830.3				4	1,835.2	
27	3,778.6	1	547.9		27	3,778.6	1	547.9	
		2	306.7				2	306.7	
		3	303.4				3	303.4	
		4	216.4				4	216.4	
		5	297.6				5	297.6	
		6	425.8				6	425.8	
		7	191.8	8과 공동개발			7	191.8	8과 공동개발
		8	128.0	7과 공동개발			8	128.0	7과 공동개발
		9	548.7				9	548.7	
		10	186.4				10	186.4	
		11	266.2				11	266.2	
		12	162.2				12	162.2	
		13	197.5				13	197.5	
30	3,530.2	1	495.8		30	3,530.3	1	496.0	
		2	338.3				2	338.2	
		3	698.4				3	698.4	
		4	400.0				4	400.0	
		5	331.7				5	331.8	
		6	318.6				6	318.5	
		7	513.2				7	513.2	
		8	148.2				8	148.2	
		9	128.9				9	128.9	
		10	157.1				10	157.1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 일반용지(B)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번호	획지번호		
8	1	· 면적변경 : 1,269.0㎡ → 1,269.3㎡ · 획지분할 가능선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착오로 누락
	2	· 면적변경 : 349.7㎡ → 349.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379.3㎡ → 379.2㎡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1	1	· 면적변경 : 473.2㎡ → 473.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2	1	· 면적변경 : 510.8㎡ → 513.7㎡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1,830.3㎡ → 1,835.2㎡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0	1	· 면적변경 : 495.8㎡ → 496.0㎡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 면적변경 : 338.3㎡ → 338.2㎡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331.7㎡ → 331.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 면적변경 : 318.6㎡ → 318.5㎡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일반용지 (C)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7,605.7	1	14,698.1		1	27,583.5	1	14,687.4	
		2-1	3,786.4				2-1	3,789.9	
		2-2	6,914.9				2-2	6,900.4	
		2-3	85.3				2-3	85.3	하수도
		3	956.7				3	956.5	
		4	632.1				4	631.8	
		5	532.2				5	532.2	
3	5,726.9	1	5,726.9	도로(광로2-4호선)	3	5,747.2	1	5,747.2	도로(광로2-4호선)
4	2,950.9	1	2,764.8	어린이공원	4	2,965.8	1	2,779.7	어린이공원
		2	186.1	하수도			2	186.1	하수도
5	3,357.4	1	3,357.4	도로(광로2-4호선)	5	3,381.6	1	3,381.6	도로(광로2-4호선)
10	4,394.3	1	2,369.1		10	4,394.3	1	2,369.1	
		2	674.3				2	674.3	
		3	532.2				3	532.2	
		4	180.2	5와 공동개발 권장			4	180.2	5와 공동개발 권장
		5	300.2	4와 공동개발 권장			5	300.2	4와 공동개발 권장
		6	338.3				6	338.3	
15	872.3	1	872.3	도로(광로2-4호선)	15	874.6	1	874.6	도로(광로2-4호선)
18	9,108.3	1	9,108.3	초등학교	18	9,129.0	1	9,129.0	초등학교
23	5,228.4	1	147.0		23	5,228.4	1	147.0	
		2	153.0				2	153.0	
		3	182.7				3	182.7	
		4	292.6				4	292.6	
		5	402.7				5	402.7	
		6	265.7				6	265.7	
		7	223.9				7	223.9	
		8	236.4				8	236.4	
		9	172.8				9	172.8	
		10	325.1				10	325.1	
		11	968.7				11	968.7	
		12	214.0				12	214.0	
		14	230.6				14	230.6	
		15	339.2				15	339.2	
		16	214.6				16	214.6	
		17	249.7				17	249.7	
		18	319.5				18	319.5	
		19	290.2				19	290.2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4	5,370.8	1	480.4		24	5,370.8	1	480.3	
		2	411.2				2	411.2	
		3	431.2				3	431.2	
		4	625.2				4	625.2	
		5	1,361.2				5	1,361.3	
		6	433.7				6	433.7	
		7	218.2				7	218.2	
		8	391.7				8	391.7	
		9	229.6				9	229.6	
		10	172.3				10	172.3	
		11	166.7				11	166.7	
		12-1	231.8				12-1	231.8	
		12-2	217.6				12-2	217.6	
25	5,635.1	1	148.4		25	5,635.0	1	148.3	
		2	127.8				2	127.8	
		3	286.8				3	286.8	
		4	453.4				4	453.4	
		5	203.9				5	203.9	
		6	173.2				6	173.2	
		7	502.6				7	502.6	
		8	268.2				8	268.2	
		9	423.7				9	423.7	
		10	671.4				10	671.4	
		11	370.9				11	370.9	
		12	298.5				12	298.5	
		13	177.5				13	177.5	
		14	320.0	마을회관			14	319.9	마을회관
		15	322.2	파출소			15	322.2	파출소
		16	886.6				16	886.7	
26	4,435.9	1	599.3		26	4,435.9	1	599.3	
		2	333.7				2	333.7	
		3	656.8				3	656.8	
		4	134.7				4	134.7	
		5	135.0				5	135.0	
		6	592.6				6	592.6	
		7	682.2				7	682.2	
		8	143.8	9와 공동개발 권장			8	143.8	9와 공동개발 권장
		9	224.2	8과 공동개발 권장			9	224.2	8과 공동개발 권장
		10	158.2				10	158.2	
		11	331.4				11	331.4	
		12	300.0	13과 공동개발 권장			12	300.0	13과 공동개발 권장
		13	144.0	12와 공동개발 권장			13	144.0	12와 공동개발 권장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8	1,897.8	1	369.5		28	1,897.8	1	369.5	
		2	174.8				2	174.8	
		3	249.8				3	249.8	
		4	170.0				4	170.0	
		5	395.2				5	395.2	
		6	216.9				6	216.9	
		7	321.6				7	321.6	
28-1	2,104.1	1	2,104.1	주차장	28-1	2,104.1	1	2,104.1	주차장
29	3,930.1	1	529.0	2, 3, 16와 공동개발	29	3,930.1	1	529.0	2, 3, 16와 공동개발
		2	203.0	1, 3, 16와 공동개발			2	203.0	1, 3, 16와 공동개발
		3	596.8	1, 2, 16와 공동개발			3	596.8	1, 2, 16와 공동개발
		4	283.0				4	283.0	
		5	391.1				5	391.1	
		6	185.8				6	185.8	
		7	366.6				7	366.6	
		8	117.2				8	117.2	
		9	100.0				9	100.0	
		10	119.6				10	119.6	
		11	96.0				11	96.0	
		12	97.2				12	97.2	
		13	247.6				13	247.6	
		14	316.6				14	316.6	
		15	140.1				15	140.1	
		16	140.5	1, 2, 3와 공동개발			16	140.5	1, 2, 3와 공동개발
31	5,097.2	1	173.8		31	5,097.1	1	173.8	
		2	262.1				2	262.2	
		3	644.2				3	644.0	
		4	352.6				4	352.6	
		5	896.8				5	896.6	
		6	181.7				6	181.7	
		7	637.3				7	637.3	
		8	227.6	보행자전용도로			8	227.8	보행자전용도로
		9	135.0				9	135.0	
		10	405.6				10	405.6	
		11	182.4				11	182.4	
		12	187.2				12	187.2	
		13	287.9				13	287.9	
		14	367.6				14	367.6	
		15	155.4				15	155.4	
32	2,728.0	1	2,728.0	어린이공원	32	2,727.8	1	2,727.8	어린이공원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3	3,235.4	1	359.0		33	3,235.4	1	359.0	
		2	180.2				2	180.2	
		3	188.9				3	188.9	
		4	395.1				4	395.1	
		5	487.5				5	487.5	
		6	207.2				6	207.2	
		7	197.0				7	197.0	
		8	478.5				8	478.5	
		10	180.2				10	180.2	
		11	234.2				11	234.2	
		12	327.6				12	327.6	
		34	1,018	1			440.8		34
2	577.2				2	577.2			
35	3,297.8	1	536.9		35	3,297.3	1	536.9	
		2	234.8				2	234.8	
		3	239.0				3	239.0	
		4	192.5				4	192.5	
		5	439.0				5	439.0	
		6	609.6				6	609.2	
		7	310.5				7	310.4	
		8	337.2				8	337.2	
		9	398.3				9	398.3	
36	3,368.1	1	394.5		36	3,368.1	1	394.5	
		2	194.4				2	194.4	
		3	500.2				3	500.2	
		4	207.9				4	207.9	
		5	379.6				5	379.6	
		6	287.9				6	287.9	
		7	262.7				7	262.7	
		8	308.9				8	308.9	
		9	261.8				9	261.8	
		10	570.2				10	570.2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7	2,455.6	1	192.3		37	2,455.6	1	192.3	
		2	313.7				2	313.7	
		3	246.2				3	246.2	
		4	135.0				4	135.0	
		5	300.4				5	300.4	
		6	369.5				6	369.5	
		7	556.0				7	556.0	
		8	144.1				8	144.1	
		9	198.4				9	198.4	
38	3,757.3	1	504.5		38	3,757.3	1	504.5	
		2	658.6				2	658.6	
		3	303.7				3	303.7	
		4	323.3				4	323.3	
		5	201.9				5	201.9	
		6	1,012.8				6	1,012.8	
		7	157.2				7	157.2	
		8	250.4				8	250.4	
		9	115.0				9	115.0	
		10	115.0				10	115.0	
		11	114.9				11	114.9	
39	3,439.6	1	392.4		39	3,439.5	1	392.4	
		2	166.6				2	166.6	
		3	1,771.0				3	1,771.0	
		4	231.5				4	231.5	
		5	878.1				5	878.0	
40	2,237.7	1	2,237.7	어린이공원	40	2,236.7	1	2,236.7	어린이공원
41	2,998.3	1	432.7		41	2,998.3	1	432.7	
		2	441.9				2	441.9	
		3	836.6				3	836.6	
		4	537.8				4	537.8	
		5	165.0				5	165.0	
		6	180.5				6	180.5	
		7	403.8				7	403.8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2	3,295.1	1	1,053.1		42	3,295.1	1	1,053.1	
		2	523.6				2	523.6	
		3	342.1				3	342.1	
		4	517.0				4	517.0	
		5	470.6				5	470.6	
		6	388.7				6	388.7	
43	4,837.7	1	1,123.4		43	4,837.9	1	1,123.4	
		2	468.1				2	468.1	
		3	530.1				3	530.1	
		4	716.1				4	716.1	
		5	216.3				5	216.3	
		6	1,783.7				6	1,783.9	
44	4,128.7	1	776.6		44	4,128.6	1	776.6	
		2	1,692.8				2	1,692.7	
		3	357.2				3	357.2	
		4	953.0				4	953.0	
		5	349.1				5	349.1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5	3,934.3	1	190.2	14와 공동개발 권장	45	3,934.2	1	190.2	14와 공동개발 권장
		2	146.8	3과 공동개발 권장			2	146.8	3과 공동개발 권장
		3	190.9	2와 공동개발 권장			3	190.9	2와 공동개발 권장
		4	348.0				4	348.0	
		5	281.6				5	281.6	
		6	376.4				6	376.4	
		7	351.3				7	351.2	
		8	224.8				8	224.7	
		9	325.5				9	325.6	
		10	355.0				10	355.0	
		11	388.1				11	388.1	
		12	230.6				12	230.6	
		13	310.4				13	310.4	
		14	214.7	1과 공동개발 권장			14	214.7	1과 공동개발 권장
46	3,585.6	1	303.8		46	3,585.7	1	303.8	
		2	516.1				2	516.2	
		3	573.5				3	573.5	
		4	406.9				4	406.9	
		5	412.9				5	412.9	
		6	296.4				6	296.4	
		7	112.0				7	112.0	
		8	112.1				8	112.1	
		9	153.9				9	153.9	
		10	267.7				10	267.7	
		11	430.3				11	430.3	
47	2,965.1	1	362.3		47	2,964.7	1	362.3	
		2	117.1				2	117.1	
		3	116.3				3	116.3	
		4	325.7				4	325.7	
		5	366.6				5	366.6	
		6	720.5				6	720.3	
		7	610.9				7	610.8	
		8	117.4				8	117.4	
		9	101.4				9	101.4	
		10	126.9				10	126.8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8	4,112.5	1	734.3		48	4,112.7	1	734.3	
		2	468.6				2	468.7	
		3	385.3				3	385.3	
		4	659.7				4	659.6	
		5	222.5				5	222.6	
		6	348.9				6	349.0	
		7	230.1				7	230.1	
		8-1	292.5				8-1	292.5	
		8-2	118.3				8-2	118.3	
		8-3	237.1				8-3	237.1	
		9	100.3				9	100.3	
10	314.9		10	314.9					
49	3,399.3	1	467.7		49	3,399.4	1	467.7	
		2	318.7				2	318.7	
		3	498.7				3	498.6	
		4	885.1				4	885.1	
		5	100.6				5	100.6	
		6	105.1				6	105.1	
		7	109.6				7	109.6	
		8	355.6				8	355.7	
		9	124.5				9	124.5	
		10	299.0				10	299.0	
		11	134.7				11	134.8	
50	2,454.5	1	133.2		50	2,454.5	1	133.2	
		2	139.5				2	139.5	
		3	387.5				3	387.5	
		4	166.4				4	166.4	
		5	205.0				5	205.0	
		6	195.2				6	195.2	
		7	287.8				7	287.8	
		8	155.0				8	155.0	
		9	249.8				9	249.8	
		10	360.2				10	360.2	
		11	174.9				11	174.9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51	2,625.2	1	244.0		51	2,624.7	1	244.0	
		2	518.3				2	518.2	
		3	580.3				3	580.1	
		4	173.2				4	173.1	
		5	298.3				5	298.2	
		6	200.2				6	200.2	
		7	197.1				7	197.1	
		8	413.8				8	413.8	
52	4,205.0	1	4,205.0	어린이공원	52	4,205.0	1	4,205.0	어린이공원
53	5,253.6	1	426.0		53	5,253.9	1	426.0	
		2	858.3				2	858.4	
		3	1,024.4				3	1,024.1	
		4	213.4				4	213.4	
		5	236.0				5	236.1	
		6	166.5				6	166.5	
		7	381.9				7	381.9	
		8	242.6				8	242.8	
		9	253.6				9	253.5	
		10	260.1				10	260.1	
		11	182.7				11	182.9	
		12	209.1				12	209.1	
		13	190.5				13	190.6	
		14	210.9				14	210.9	
		15	199.1				15	199.1	
		16	198.5				16	198.5	
54	4,157.9	1	550.1		54	4,157.8	1	550.1	
		2	806.4				2	806.3	
		3	522.9				3	522.9	
		4	388.4				4	388.3	
		5	426.1				5	426.1	
		6	230.9				6	231.0	
		7	313.4				7	313.3	
		8	176.7				8	176.7	
		9	350.9				9	351.0	
		10	392.1				10	392.1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55	4,396.1	1	257.8		55	4,396.1	1	257.8	
		2	414.0				2	414.0	
		3	589.9				3	589.9	
		4	112.9				4	112.9	
		5	112.4				5	112.4	
		6	112.1				6	112.1	
		7	151.4				7	151.4	
		8	142.9				8	142.9	
		9	327.5				9	327.5	
		10	394.2				10	394.2	
		11	374.1				11	374.1	
		12	489.0				12	489.0	
		13	250.8				13	250.8	
		14	177.4				14	177.4	
		15	126.9				15	126.9	
		16	362.8				16	362.8	
56	3,241.0	1	286.9		56	3,240.9	1	286.9	
		2	1,132.3				2	1,132.2	
		3	508.8				3	508.8	
		4	382.2				4	382.2	
		5	275.8				5	275.8	
		6	338.9				6	338.9	
		7	316.1				7	316.1	
57	6,853.0	1	420.7		57	6,852.8	1	420.7	
		2	560.8				2	560.7	
		3	190.7				3	190.8	
		4	197.3				4	197.1	
		5	204.2				5	204.4	
		6	276.9				6	277.0	
		7	260.9				7	260.6	
		8	343.4				8	343.3	
		9	268.8				9	268.7	
		10	637.9				10	637.5	
		11	238.6				11	238.8	
		12	287.6				12	287.8	
		13	432.8				13	432.7	
		14	250.4				14	250.6	
		15	459.0				15	458.9	
		16	352.4				16	352.5	
		17	572.1				17	572.1	
		18	413.3				18	413.5	
		19	135.2				19	135.1	
		20	145.0				20	145.0	
		21	205.0				21	205.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 일반용지(C)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	· 면적변경 : 14,698.1㎡ → 14,687.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1	· 면적변경 : 3,786.4㎡ → 3,789.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2	· 면적변경 : 6,914.9㎡ → 6,900.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956.7㎡ → 956.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632.1㎡ → 631.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1	· 면적변경 : 5,726.9㎡ → 5,747.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1	· 면적변경 : 2,764.8㎡ → 2,779.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1	· 면적변경 : 3,357.4㎡ → 3,381.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5	1	· 면적변경 : 872.3㎡ → 874.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8	1	· 면적변경 : 9,108.3㎡ → 9,129.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4	1	· 면적변경 : 480.4㎡ → 480.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1,361.2㎡ → 1,361.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5	1	· 면적변경 : 148.4㎡ → 148.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4	· 면적변경 : 320.0㎡ → 319.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6	· 면적변경 : 886.6㎡ → 886.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1	2	· 면적변경 : 262.1㎡ → 262.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644.2㎡ → 644.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896.8㎡ → 896.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면적변경 : 227.6㎡ → 227.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2	1	· 면적변경 : 2,728.0㎡ → 2,727.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4	1	· 면적변경 : 440.8㎡ → 440.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5	6	· 면적변경 : 609.6㎡ → 609.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 면적변경 : 310.5㎡ → 310.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9	5	· 면적변경 : 878.1㎡ → 878.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0	1	· 면적변경 : 2,237.7㎡ → 2,236.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3	6	· 면적변경 : 1,783.7㎡ → 1,783.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 일반용지(C)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44	2	· 면적변경 : 1,692.8㎡ → 1,692.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5	7	· 면적변경 : 351.3㎡ → 351.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면적변경 : 224.8㎡ → 224.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9	· 면적변경 : 325.5㎡ → 325.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6	2	· 면적변경 : 516.1㎡ → 516.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7	6	· 면적변경 : 720.5㎡ → 702.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 면적변경 : 610.9㎡ → 610.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0	· 면적변경 : 126.9㎡ → 126.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8	2	· 면적변경 : 468.6㎡ → 468.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659.7㎡ → 659.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222.5㎡ → 222.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 면적변경 : 348.9㎡ → 349.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9	3	· 면적변경 : 498.7㎡ → 498.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면적변경 : 355.6㎡ → 355.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1	· 면적변경 : 134.7㎡ → 134.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1	2	· 면적변경 : 518.3㎡ → 518.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580.3㎡ → 58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173.2㎡ → 173.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298.3㎡ → 298.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3	2	· 면적변경 : 858.3㎡ → 858.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1,024.4㎡ → 1,024.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236.0㎡ → 236.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면적변경 : 242.6㎡ → 242.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9	· 면적변경 : 253.6㎡ → 253.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1	· 면적변경 : 182.7㎡ → 182.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4	2	· 면적변경 : 806.4㎡ → 806.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388.4㎡ → 388.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 면적변경 : 230.9㎡ → 231.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 면적변경 : 313.4㎡ → 313.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9	· 면적변경 : 350.9㎡ → 351.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6	2	· 면적변경 : 1,132.3㎡ → 1,132.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 일반용지(C)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57	2	· 면적변경 : 560.8㎡ → 560.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변경 : 190.7㎡ → 190.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변경 : 197.3㎡ → 197.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변경 : 204.2㎡ → 204.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 면적변경 : 276.9㎡ → 277.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 면적변경 : 260.9㎡ → 260.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면적변경 : 343.4㎡ → 343.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9	· 면적변경 : 268.8㎡ → 268.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0	· 면적변경 : 637.9㎡ → 637.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1	· 면적변경 : 238.6㎡ → 238.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2	· 면적변경 : 287.6㎡ → 287.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3	· 면적변경 : 432.8㎡ → 432.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4	· 면적변경 : 250.4㎡ → 250.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5	· 면적변경 : 459.0㎡ → 458.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6	· 면적변경 : 352.4㎡ → 352.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8	· 면적변경 : 413.3㎡ → 413.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9	· 면적변경 : 135.2㎡ → 135.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A)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	2 공동주택용지 (A)	용도	허용 용도	· [별표 2]의 A 허용용도
			불허 용도	· [별표 2]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5% 이하	
		용 적 률	· 205%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용적률 190% 이하 제한	
		높 이	· 19층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16층 이하 제한	
		배 치	· 남북도로(광로2-4호선)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를 유도 ·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별표 3]의 A 직각배치, 건축물의 배치 참조 - [별표 4]의 A 외관 참조	
		형 태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 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별표 4]의 A 주동길이, 지붕 참조	
		색 채	- [별표4]의 A 외관(색채계획표) 참조	
		건 축 선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로2-2호선변으로 건축한계선 폭1.5m 지정 - [별표 3]의 A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	6 공동주택용지 (A)	용도	허용 용도	· [별표 2]의 A 허용용도	
			불허 용도	· [별표 2]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5% 이하		
		용 적 륜	· 212%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용적률 190% 이하 제한		
		높 이	· 19층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16층 이하 제한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도로(광로2-4호선)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동편배치의 경우 2호 이내, 17층 이하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의 A 직각배치, 건축물의 배치, 기타 참조 - [별표 4]의 A 외관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4]의 A 주동길이, 지붕 참조 		
		색 채	- [별표4]의 A 외관(색채계획표) 참조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럭 동측 종로 3-144호선변 일부 구간에 건축한계선 폭 3.0m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의 A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4	14 공동주택용지 (A)	용도	허용 용도	· [별표 2]의 A 허용용도
			불허 용도	· [별표 2]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5% 이하	
		용 적 륜	· 210%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용적률 190% 이하 제한	
		높 이	· 18층 이하 · 획지별 단독개발시 16층 이하 제한	
		배 치	· 남북도로(광로2-4호선)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2호 초과, 동편배치의 경우 16층 이하로 제한 - [별표 3]의 A 직각배치, 건축물의 배치, 기타 참조 - [별표 4]의 A 외관 참조	
		형 태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 하고, 지역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별표 4]의 A 주동길이, 지붕 참조	
		색 채	- [별표4]의 A 외관(색채계획표) 참조	
		건 축 선	- 블럭 동측 종로 3-143호선변 연결 전 구간에 건축한계선 폭 1.5~4.5m 지정 - [별표 3]의 A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나. 일반용지(B)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8 (1~3,5~6-1)	8 (1~3,5~6-1)	용 도	전층 허용용도	[별표 2]의 B 전층 허용용도
			1층 허용용도	[별표 2]의 B 1층 허용용도
			불허 용도	[별표 2]의 B 불허용도
			권장 용도	[별표 2]의 B 권장용도
11 (1~5)	11 (1~5)			
22 (1~4)	22 (1~4)			
27 (1~13)	27 (1~13)	건폐율	60% 이하	
30 (1~10)	30 (1~10)	용적률	· 18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률 합계(최종 허용용적률)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 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이	4층 이하	
		배치	[별표 3]의 B 건축한계선 참조	
		형태	[별표 4]의 B·C 전부문 참조	
		색채	[별표 4]의 B·C 색채 참조	
		건축선	· 종로 2-184호선변을 중심으로 각 블록 전면 및 측면부 : 건축한계선 폭 2m 지정 · 지구 동측 초입 도로 예각부 (30BL 7LOT) : 건축한계선 폭 2m 지정 · [별표 3]의 B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다. 일반용지(C)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 (1, 2-1, 2-2, 3~5) · 10 (1~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일반용지 (C) · 1 (1, 2-1, 2-2, 3~5) · 10 (1~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전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C 전층 허용용도	
		용도	1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C 1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 2]의 C 불허용도
			권장용도	· [별표 2]의 C 권장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률 합계(최종 허용 용적률)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 이	· 3층 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에 한함
			배 치	· [별표 3]의 C 건축한계선 참조
			형 태	· [별표 4]의 B·C 전부분 참조
			색 채	· [별표 4]의 B·C 색채 참조
			건축선	· 중로3-143호선 및 중로3-144호선변 :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 [별표 3]의 C 건축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라. 학교 용 지 (D)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8 (1)	· 18 (1)	용도	전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D 전층 허용용도
			1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D 1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 2]의 D 불허용도
			권장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을 함께 (최종 허용 용적률) 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 3]의 D 건축한계선 참조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부지 동측 종로 3-143호선 인접부 전구간 :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 [별표 3]의 D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마. 공공청사 용지 (E)

기 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25 (15)	공공청사용지(E) ■ 파출소 25 (15)	용도	전층 허용용도	[별표 2]의 E 전층 허용용도	
			1층 허용용도	[별표 2]의 E 1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2]의 E 불허용도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률 합계(최종 허용 용적률)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이		4층 이하	
		배치		[별표 3]의 E 건축한계선 참조	
		형태		-	
		색채		-	
		건축선		■ 파출소 부지 · 부지 동측 종로 3-144호선 인접부 전구간 :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바. 기 타 용 지

■ 주차장 용지 (F) : 지평식에 한함 (건축물 건축 불가)

■ 어린이공원 부지

· 3호 어린이공원 부지 동측 중로 3-144호선 인접부 전구간에 건축한계선 : 폭 1.5m 지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사. 종교시설용지 (G)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29 (1,2,3,16)	종교시설용지 (G) · 29 (1,2,3,16)	용도	전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G 전층 허용용도
			1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G 1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 2]의 G 불허용도
			권장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을 함께 (최종 허용 용적률) 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 이	· 3층 이하 (첨탑의 높이 12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별표 4]의 G 색채 참조	
건 축 선	-			

아. 일반용지 (H)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25 (14)	일반용지 (H) · 25 (14)	용도	전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H 전층 허용용도
			1층 허용용도	· [별표 2]의 H 1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 2]의 H 불허용도
			권장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인센티브 부여시 완화되는 용적률 합계 (최종 허용 용적률) 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별표 3]의 H 건축한계선 참조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부지 동측 종로 3-144호선 인접부 전구간 :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 [별표 3]의 H 건축한계선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어요소	제어대상	제어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부분	· 전면공지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공개공지	·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지	·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변 및 적절한 위치에 배치, 상시 개방하며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조성 지침에 적합하게 조성토록 함
	· 내부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조경 (폭원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도로 6m + 내부조경 14m = 20m 이격) - 수림대는 가로변 소음차단 및 시각적 차폐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며 속성활엽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목백합, 區木인 은행나무를 밀식하는 것을 권장 · 8BL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및 1BL 3,4,5LT 주거용지 주변으로 내부조경(폭원 8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 수림대는 완충역할을 위해 스트로브잣나무 등 상록교목과 백목련, 자목련, 상수리나무 등 낙엽교목 및 낙엽관목을 밀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이상 되도록 할 것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계획
기 타	· 담 장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 불허를 원칙으로 함.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계획

주) 세부 사항은 [별표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참조

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A)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면 적 (㎡)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인구 밀도 (인/ha)	층 수	용적율			
2	2 (공동 주택 용지)	개발 밀도	15,039.6	296	860	564	19층 이하 (단독개발시 16층 이하 제한)	205% 이하 (단독개발시 190% 이하 제한)		
		대 지 내 공 지 및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조경(폭원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도로 6m + 내부조경 14m = 20m 이격) - 수림대는 가로변 소음차단 및 시각적 차폐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며 속성활엽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목백합, 區木인 은행나무를 밀식하는 것을 권장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40%를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이면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수림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별표 5]의 A 대지내 공지 참조
		교 통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별표 5]의 A 교통처리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2	2 (공동 주택 용지)	옥 외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 						·[별표 5]의 A 옥외시설물 참조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경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별표 5]의 A 기타사항 참조
6	6 (공동 주택 용지)	개발 밀도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총 수	용적률	
			29,460.6	586	1,700	577	19층 이하 (단독개발시 16층 이하로 제한)	212% 이하 (단독개발시 용적률 190% 이하로 제한)	
		대지내 공 지 및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조경(폭원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도로 6m + 내부조경 14m = 2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대는 가로변 소음차단 및 시각적 차폐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며 속성활엽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목백합, 區木인 은행나무를 밀식하는 것을 권장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40%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이거나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수림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별표 5]의 A 대지내 공지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6	6 (공동 주택 용지)	교통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2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별표 5]의 A 교통처리 참조
	옥 외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외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 						·[별표 5]의 A 옥외시설물 참조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별표 5]의 A 기타사항 참조	
14	14 (공동 주택 용지)	개발 밀도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층 수	용적률	·[별표 5]의 A 대지내 공지 참조
	28,309.3	572	1,659	586	18층 이하 (단독개발시 16층 이하로 제한)	210% 이하 (단독개발시 190% 이하로 제한)			
대지내 공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조경(폭원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도로 6m + 내부조경 14m= 2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대는 가로변 소음차단 및 시각적 차폐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며 속성활엽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목백합, 區木인 은행나무를 밀식하는 것을 권장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40%를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이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수림대와 접하는 담장은 0.5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14	14 (공동 주택 용지)	교통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 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별표 5]의 A 교통처리 참조
		옥 외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 치하여 가로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 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 	·[별표 5]의 A 옥외시설물 참조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 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 ·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 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 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별표 5]의 A 기타사항 참조
중로 2-184 호선	중로 2-184 호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포장재의 재질은 점토블럭 등 투수성이 높은 것을 사용 · 중로2-184호선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게활 동 및 가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고라, 벤치 등의 시 설을 설치 ·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루프형 교통순환체계를 유지 · 확보된 보도구간에는 빛나무 등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는 수종 및 미관등 설치 	·[별표 10]의 보행자 우선도로 참조

나. 일반용지 (B·C)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계획내용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계획내용
· 8 (1~3,5~6-1) · 11 (1~5) · 22 (1~4) · 27 (1~13) · 30 (1~10)	일반용지 (B) · 8 (1~3,5~6-1) · 11 (1~5) · 22 (1~4) · 27 (1~13) · 30 (1~10)	[별표 5]의 B·C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8 (1~3,5~6-1) · 11 (1~5) · 22 (1~4) · 27 (1~13) · 30 (1~10)	일반용지 (B) · 8 (1~3,5~6-1) · 11 (1~5) · 22 (1~4) · 27 (1~13) · 30 (1~10)	[별표 5]의 B·C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1 (1, 2-1, 2-2, 3~5) · 10 (1~6) · 10 (2~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일반용지 (C) · 1 (1, 2-1, 2-2, 3~5) · 10 (1~6) · 10 (2~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별표 5]의 B·C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1 (1, 2-1, 2-2, 3~5) · 10 (1~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일반용지 (C) · 1 (1, 2-1, 2-2, 3~5) · 10 (1~6) · 23 (1~12, 14~19) · 24 (1~11, 12-1,12-2) · 25 (1~13, 16) · 26 (1~13) · 28 (1~7) · 29 (4~15) · 31 (1~7, 9~15) · 33 (1~8, 10~12) · 34 (1~2) · 35 (1~9) · 36 (1~10) · 37 (1~9) · 38 (1~11) · 39 (1~5) · 41 (1~7) · 42 (1~6) · 43 (1~6) · 44 (1~5) · 45 (1~14) · 46 (1~11) · 47 (1~10) · 48 (1~7, 8-1~3,9,10) · 49 (1~11) · 50 (1~11) · 51 (1~8) · 53 (1~16) · 54 (1~10) · 55 (1~16) · 56 (1~7) · 57 (1~21)	[별표 5]의 B·C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18 (1)	학교용지 (D) · 18 (1)	[별표 5]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18 (1)	학교용지 (D) · 18 (1)	[별표 5] D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5 (15)	공공청사용지 (E) ■ 파출소 · 25 (15)	[별표 5]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5 (15)	공공청사용지 (E) ■ 파출소 · 25 (15)	[별표 5] E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8-1 (1)	주차장용지 (F) · 28-1 (1)	[별표 5]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8-1 (1)	주차장용지 (F) · 28-1 (1)	[별표 5] F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9 (1~3, 16)	종교시설용지 (G) · 29 (1~3, 16)	[별표 5]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9 (1~3, 16)	종교시설용지 (G) · 29 (1~3, 16)	[별표 5] G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기타 사항 참조
· 25 (14)	일반용지 (H) · 25 (14)	[별표 5]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25 (14)	일반용지 (H) · 25 (14)	[별표 5] H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주) ()는 획지번호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0(2~6)	10(2~6)	· 10(2~6) 위치 삭제	· 오기(착오)에 의한 삭제
18(1)	18(1)	· [별표5] 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별표5] D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오기(착오)로 기재 정정
25(15)	25(15)	· [별표5] 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별표5] E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오기(착오)로 기재 정정
28-1(11)	28-1(11)	· [별표5] 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별표5] F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오기(착오)로 기재 정정
29(1~3, 16)	29(1~3, 16)	· [별표5] 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별표5] G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기타사항 참조	· 오기(착오)로 기재 정정
25(14)	25(14)	· [별표5] 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별표5] H의 대지내 공지, 차량동선 참조	· 오기(착오)로 기재 정정

별 표

- [별표 1] : 인구지표 산출 근거
- [별표 2] : 건축물 용도계획
- [별표 3] : 건축물 배치계획
- [별표 4] : 건축물 형태계획
- [별표 5]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별표 6] : 주차장에 관한 계획
- [별표 7]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별표 8] : 교통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별표 9] : 자전거도로에 관한 계획
- [별표10] :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관한 계획
- [별표11] : 어린이공원에 관한 계획
- [별표12] : 건축기준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별표13]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별표 1]

인구지표 산출 근거

1.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공동주택(아파트)용지(A)
 - 현재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중인 개발규모를 수용
- 일반용지(B)
 - 당해 지역은 본지구의 중심·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1층에는 주거용도 입지가 제한한 바, 타 지역의 개발양상 및 사업성 측면에서 대부분 근린생활 기능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상층을 주거로 이용하는 패턴을 고려하여 필지당 1세대 산정(획지 분할가능선 지정 필지는 그 선으로 나누어진 획지를 하나의 획지로 산정)
- 일반용지(C)
 - 본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단독주택 중심의 순수주거를 유도함에 따라 근린생활기능은 1층에만 입지가능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막연히 단독주택으로서 1세대/1필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민간 자율 건축에 따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의 수요 또한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타지구의 개발양상을 보면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잠정수요를 가정하여 인구수 산정
 - 인근에 기 개발되어 사업 완료된 연희지구의 경우 본 지구와 비교 해보면 층수제한 폭이 높고 용도 또한 혼재 상태이므로 밀도 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임을 볼 때, 이를 고려한 적정수요 산출

연희지구 건축물 동수 및 세대수

구 분		단독주택 (주상복합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 파 트	합 계	
사 업 시행전	동 수	900	-	-	900	
	세대수	4,995	-	-	4,995	
사 업 시행후	계 획	동 수	3,245	648	112	4,005
		세대수	3,245	3,886	2,228	9,359
	현 재 현 황	동 수	229	735	68	1,032
		세대수	229	7,350	5,360	12,939

• 단독 : 연립(다세대) = 24 : 76
 • 단독주택 평균 단위 세대수 : 1세대 / 필지 • 연립(다세대) 평균 세대수 : 10세대/필지

자료 : 도시밀도 관리정책의 실현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2.

- 상기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볼 때, 연희지구 조성 당시, 주거환경 측면보다는 사업성 및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지구내 일반용지(C)의 필지규모는 연희지구에 비해 적은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지구단

위계획에서 용도제한 및 층수제한(3층) 등 계획 제어요소들의 도입, 또한 타 지구에 비해 대로에서 이격되어 인입되어 있고 주거지로서의 특성이 강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례분석 결과 조정 적용

- 단독주택(주상복합포함)용지 : 연립(다세대)주택 용지 = 40 : 60
- 단독주택 필지 평균 단위세대수 : 1세대/필지 (연희지구와 동일)
- 연립(다세대)주택 필지 : 6세대/필지 (연희지구의 60% 적용)

2. 수용인구 예측

■ 총괄

용 지구 분		계획원단위 (세대/필지)	계획세대 (세대)	계획인구 (인)	비 고
계			3,039	8,817	2.9인/세대
공동주택(아파트)용지(A)		-	1,454	4,219	
일반용지(B)		1세대/필지	37	108	
일반용지(C)	단독주택	1세대/필지	134	389	단독 : 연립 = 40 : 60
	연립(다세대)	7세대/필지	1,414	4,101	

■ 공동주택(아파트)용지 (A)

위 치	면 적 (㎡)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인구밀도 (인/ha)	층 수	용적률
	72,797.7	1,454	4,219	578	-	-
2 BL	15,039.6	296	860	564	19층 이하	205% 이하
6 BL	29,449.3	586	1,700	577	19층 이하	212% 이하
14BL	28,308.8	572	1,659	586	18층 이하	210% 이하

■ 일반용지 (B) : 총 37필지 : 108인

- 37필지 x 1세대/필지 = 37세대 x 2.9인/세대 = 108인
(획지분할가능선으로 구획된 필지는 그 합을 필지수로 산정)

■ 일반용지 (C) : 총 336필지 : 4,490인

- 단독주택용지(40%) : 134필지 x 1세대/필지 = 134세대 x 2.9인/세대 = 389인
- 연립(다세대)용지(60%) : 202필지 x 7세대/필지 = 1,414세대 x 2.9인/세대 = 4,101인

[별표 2]

건축물 용도 계획

용도		A	B	C	D	E	F	G	H
구분	대상용지	아파트용지	일반용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	일반용지
허용용도	전층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6호 부대시설 제7조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아목.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제6호 종교시설 중 동호 가목. 종교집회장 (납골당 제외) 제7호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소매시장 및 다목. 상점 제9호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나목. 교육원, 라목. 학원 제11호 노유자설 중 동호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중 금융업소 및 사무소 제19호 위험물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동호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나목. 교육원, 라목. 학원 제11호 노유자설 중 동호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중 동호 다목 운동장 중 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기존시설에 한함 : 1BL 1, 2-1, 2-2, 3, 4, 5, 6, 7L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지평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마목.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 중 동호 가목. 종교집회장 (납골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동호 사목. 마을회관
	1층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주거용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아목.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지하층 주거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아파트 포함) 지하층 및 지상층(1층) 주거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아파트 포함) 지하층 주거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 허용용도 명기사항 중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아목.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	-	-	-	-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구 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아파트 용 지	A	직각배치	· 남북도로(광로2-4호선)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를 유도
		건축한계선	· 교통영향평가 내용 수용에 따라 폭 1.5~4.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행공간의 확보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2블럭 : 동측 소로2-2호선변 전구간 폭 1.5m 지정 - 6블럭 : 동측 중로3-144호선변 일부구간 폭 3.0m 지정 - 14블럭 : 동측 중로3-143호선변 전구간 폭 1.5~4.5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건축물의 배치	·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기 타	· 6BL : 동편배치의 경우 2호 이내, 17층 이하로 제한 · 14BL : 2호 초과, 동편배치의 경우 16층 이하로 제한
일반용지	B	건축한계선	· 중로 2-184호선 변을 중심으로 각 블럭 전면 및 측면부 : 폭 2m 지정 · 지구 동측 초입 도로 예각부(30BL 7LOT) : 폭 2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C	건축한계선	· 중로3-143호선 및 중로3-144호선변 : 폭 1.5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공통	건축물 방향성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하다고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학 교	D	건축한계선	· 동측 중로3-143호선변 전구간 : 폭 1.5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공공청사 용 지	E	건축한계선	· 공공청사(파출소) : 인접도로 중로3-144호선변 : 폭 1.5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주 차 장 용 지	F	-	-
종교시설 용 지	G	-	-
일반용지	H	건축한계선	· 인접도로 중로3-144호선변 : 폭 1.5m 지정 ※ 블럭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별표 4]

건축물 형태 분류표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아파트 용지	A	주 동 길 이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지 붕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외 관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색채계획표 참조
일 반 용 지	B · C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20센티미터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건축물 1층 높이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높이(처마높이) 4m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물 외벽면 처리	· 도로폭 18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는 1층 전면 벽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당해 관련 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폭 18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를 사용하여야 함
		지 붕	·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건축물 의장 (권장사항)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함
		건축물 색채 (권장사항)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서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색채계획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옥외 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에 따름
		기 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건축시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학교용지	D	-	-
공공청사 용지	E	-	-
주 차 장 용지	F	-	-
종교시설 용지	G	건축물 색채 (권장사항)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서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시가지경관계획을 참조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색채계획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일반용지	H	-	-

색 채 기준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을 권장 •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색 채 계획표

구 분	유 형(Type)	색이름	Munsell H/V/C	도료용 표준색
주조색	Type 1 (침착한색 + 한색)	밝은연두	7.7GY 8.9/1.4	40851
			8.8GY 8.2/3.7	39812
	Type 2 (침착한색 + 한색)	밝은청록	2.8B 7.9/1.4	52781
			8.0BG 7.0/1.1	49671
	Type 3 (명랑한색 + 한색)	밝은 청회색	1.4B 9.2/0.2	55911
			0.4PB 8.0/9.0	55771
	Type 4 (명랑한색 + 난색)	살 색	7.0YR 8.1/3.2	28781
			9.4YR 8.3/4.1	28812
	Type 5 (명랑한색 + 난색)	베이지	4.9Y 8.9/2.0	32871
			2.4Y 8.8/2.7	30871
	Type 6 (침착한색 + 난색)	밝은 굴색	2.5Y 8.0/10.2	31777
			2.2Y 7.9/12.5	31799

구 분	No.	Munsell H/V/C	도료용 표준색	No.	Munsell H/V/C	도료용 표준색
보조색	1	8.8GY 7.4/3.4	39692	9	4.4RP 8.2/3.0	63792
	2	8.7Y 7.8/1.9	34791	10	9.4YR 7.2/13.2	29759
	3	4.6B 8.2/2.9	51822	11	0.9Y 7.8/4.8	30783
	4	4.1B 8.3/2.1	53782	12	1.0Y 8.0/4.7	29782
	5	8.0BG 7.0/1.1	51671	13	5.8YR 7.1/4.8	26692
	6	7.7B 6.9/5.1	54694	14	1.4YR 6.8/4.6	21663
	7	4.0PB 6.7/2.1	56661	15	7.1YR 6.3/3.0	27622
	8	1.4B 6.0/0.9	50590	16	7.2YR 5.3/1.6	27521

[별표 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아파트 용 지	A	대지내 공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조경(폭원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도로 6m + 내부조경 14m = 20m 이격) · 수림대는 가로변 소음차단 및 시각적 차폐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며 속성활엽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목백합, 區木인 은행나무를 밀식하는 것을 권장 ■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40%를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이면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수림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2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6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2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14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차량출입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가능 · 가구(戶)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수림대에 1개소 지정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아파트 용 지	A	옥외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일 방 지	B · C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BL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및 1BL 3,4,5LT 주거용지 주변으로 내부조경 (폭원 8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대는 완충역할을 위해 스트로브잣나무 등 상록 교목과 백목련, 자목련, 상수리나무 등 낙엽교목 및 낙엽관목을 밀식하고, 녹화 면적률이 80% 이상 되도록 할 것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전면공지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면공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도로폭원 운영개선 내용에 적합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2.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3. 전면공지의 바닥의 포장패턴은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철기구, 쓰레기적치장, 정화조 맨홀, 수도계량기 4. 건축물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구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일 반 지	B · C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에는 일반대중의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보행활동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녹지조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폭 2m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 제공된 부분의 폭이 3미터 이상인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공개 공지의 확보)를 중복적용하지 않고 그 폭과 전면길이를 곱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전면공지의 조성은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시설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 36조 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함 · 공개공지의 배치는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변 및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여야 함 · 공개공지 조성은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제시하는 조성지침에 적합하게 조성하여야 함 ■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함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통로는 장식포장을 권장 · 폭 18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경부분은 가로변 전면공지와 연계 배치하여 쌍지마당 형태로 조성 할 것을 권장, 이 경우, 인접대지의 대지내 공지와 공동 조성할 것을 권장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인접대지와 옥외주차장을 위한 주차 출입구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불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다만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규정에 의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일 반 지	B · C	차량동선	<p>3.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여건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학교용지	D	대지내 공 지	· 일반용지(B, C)와 동일
공공청사 용 지	E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출입구를 지정할 수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종교시설 용 지	G	대지내 공지	· 일반용지(B, C)와 동일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출입구를 지정할 수 없음 ·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종시설 설치 금지 ·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에 침해되는 써치라이트는 지양하고 LED 설치 권장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일반용지	H	대지내 공 지	· 일반용지(B, C)와 동일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출입구를 지정할 수 없음

[별표 6]

주차장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계 획 내 용
주차장 용지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지평식으로 조성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불가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와 잔디를 권장

[별표 7]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설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 · 차선 폭은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차로와 보도사이에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
		도로의 체계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소통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교통 연결 체계 유지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나누며 그 정의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가로수, 녹지, 가로시설물,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길어깨를 충분히 확보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 ·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보수가 용이한 재료 · 보행자 및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추해지지 않는 재료 ■ 조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의 일정 공간 단위별로 특화 포장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차로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함 · 재료와 패턴에 있어 교차로, 보행결절점, 시설물 주변은 변화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 ■ 보도 포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포장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 임 ·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화, 강조를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 · 소형 고압블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각장애자용 포장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

구 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 민간이나 공공부문 등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시 공사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함 · 공사완료 후 공사 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 (통보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 전/후 현황사진)
		가로수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재 · 도로의 주요 진입부나 결절부, 교통시설물 주변은 가로수의 식재패턴을 달리 하여 변화를 주도록 함 · 식재간격은 8m를 원칙으로 하고 차로 경계에서 0.7~1.5m를 이격시켜 식재 ·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가로수 높이가 2m 이상인 수목을 선정 · 도로 폭 12m 이상, 보도 폭 3m 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조명시설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 · 도로의 교차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를 배제(10m)하여 시야를 개방 · 가로수 식재 후 수목의 보호를 위해 지주목과 수목보호덮개를 설치 · 버스정류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제외하고 식재
		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식 ·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 · 공해에 강한 수종의 소교목과 초화류 및 관목류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나지부분은 잔디로 피복

[별표 8]

교통시설물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교 통 시 설 물	
교 통 시설물	교 통 시설물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관한 조성 지침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 시설지침, 도시계획 시설기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편람 등 관계법규에 따름
		버 스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계획을 감안하여 집분산도로 이상의 도로에 버스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에 설치 · 다른 차량과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 각 대지로의 출입구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이격 · 횡단보도와 인접할 경우 진행방향으로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 ■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횡단보도, 교차로 등과의 연계성을 유지 · 정류장간의 간격은 350m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폭 18m 도로에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설치 ■ 버스정차대(Bus B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3m, 가속구간 18m, 정류구간 30m, 감속구간 12m의 구조로 함 · 포장패턴, 가로시설물 등을 통해 대기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원활화를 도모 · 정차대는 보행 집산과 대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키오스크, 벤치 겸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 · 정차대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 20m 내외)에 가로장치물 및 가로수 식재를 배제 · 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정차대를 원칙으로 함
		횡 단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점으로 차량소통의 원활 및 보행자의 안전횡단에 기여할 수 있는 곳 · 보행자 동선이 연속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 ■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를 배제.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 보행속도, 도로폭,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4m로 하고 4m 이상으로 할 때는 2m 단위로 확폭 · 장애인, 유모차 등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로의 턱을 제거하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 차로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

구 분	도면 표시	교 통 시 설 물	
교 통 시설물	교 통 시설물	과속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m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 · 교차로 부근 및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함 ·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학교주변)에 설치 ·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기하학적 형상은 길이 4.0m, 높이 10cm의 원호형)으로 하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함

[별표 9]

자전거도로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자 전 거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등 관련법규에 따름 ■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중심도로인 폭 18m변에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폭 2.5m) 형태로 설치 · 가급적 자연스러운 선형의 종단구배 3.0%, 횡단구배 1.5~2.0% 이하로 유지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조로 하되 색깔, 질감, 패턴 등을 이용하여 보도와 구분되도록 하며 연속성 강화를 위해 포장은 투수콘크리트 함 ■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보관대는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내에 설치 · 가능한 전면, 공개공지 및 기타 도로의 가로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

[별표 10]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 특성있는 개발이 유도 · 통행, 휴식 등의 공간으로 구분 · 진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원천봉쇄를 위한 차량제어용 볼라드를 설치하되(1.5m간격),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교목 및 유실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각적 변화와 흥미를 유발 · 휴식공간에는 풍부한 식재로 공간특성을 반영 · 중심공간, 진입부 등에는 대교목을 식재하여 시각적 목표감과 상징성을 강조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 · 교목은 충분한 수관폭을 확보하여 풍부한 녹음을 제공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성에 따른 패턴과 재료의 변화를 부여, 획일성을 배제 · 방향성을 제공 · 시각 장애자용 보도포장을 설치 ■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공간구성 및 시설물 배치를 도모 · 시각적,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 · 주변시설과 적극적으로 연계,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 · 휴식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 · 차량동선과 교차되는 지점에는 볼라드 등 경계 및 안전시설을 배치 · 쉼터, 벤치, 볼라드, 조명등, 안내판, 화분대, 보행등 경용 열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 2-184호선 서측 공동주택블럭 인접부 ■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영역을 낮은 단차와 볼라드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 · 자동차의 주행속도(시속 30km이하)를 억제하기 위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 · 보도구간은 보행 및 체류의 쾌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형태를 가지도록 하며 벚나무 등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는 수종 및 미관등 설치 · 안전성과 환경성을 저해하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함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포장재의 재질은 점도블럭 등 투수성이 높은 것을 사용 · 재료의 색깔, 질감, 패턴 등을 이용하여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도록 함 · 차로부분은 과속방지시설 이외에 차량의 속도 억제를 위해 부분 요철포장을 시행 ■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점 및 종점부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별표 11]

어린이공원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어 린 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p>■ 공원의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은 일반적인 어린이공원과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 생활권별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을 적절히 배치 <p>■ 공원 진입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의 진입구는 외부의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주진입구는 3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 · 야간보행밀도가 많은 공원진입구나 차도측으로 보행등경 벤치, 볼라드 및 강화조명을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 <p>■ 공원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외곽지역에 생울타리를 식재하고 내부에는 자연 학습 및 사계절 변화 감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낙엽활엽수와 화목류를 식재토록 권장 <p>■ 공간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시설 위주로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 및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 놀이행태별로 동적놀이공간, 정적놀이공간 등 공간별로 구획하여 공간을 구성 · 놀이, 운동,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 · 공원내의 포장, 시설 등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문양을 도입 <p>■ 식 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공간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형적으로 식재 · 외곽은 상록수 위주로 차폐식재하고 공원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교목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녹음식재 시행 · 넓은 녹지의 수종은 단순화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 · 병렬식재, 교차식재, 군식 등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도 <p>■ 포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적인 소재 위주로 포장 · 격자형 패턴등으로 정형성을 유지하며 분적으로 장식포장을 가미 <p>■ 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수 등 수경시설을 도입 ·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명시설, 놀이시설 등을 적소에 배치 ·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또한, 유지관리도 편리하도록 함 <p>※ 어린이공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서지구 1,2,3,4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참조</p>

[별표 12]

건축기준 완화내용 (인센티브 기준)

구 분		조 건	완화내용 (인센티브)	적용지역		
				A	B	C
1. 대 지	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유효세장비 고려	기준용적율 × 5%	-	●	●
		소유자 상호간 (공동개발로 지정되지 않아도 가능)	기준용적율 × 3%	-	●	●
2. 용 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율 × 5%	-	●	●
3.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및 조성 지침 준수시	$\frac{\text{제공면적}}{\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율}$	-	●	●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 구간으로 조성지침 준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text{제공면적}}{\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율}$ · 전면공지 제공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인정 · 폭 3m 이상인 경우 면적전체를 인천시 건축조례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 면적으로 인정 	-	●	●

주1) 상기 조항에 의해 완화되는 용적율 합계(최종 허용용적율)의 상한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함.

2) ● 는 인센티브 적용지역을 표기한 것임

[별표 1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도면 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p>민간 부문</p>	<p>-</p>	<p>심의 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상세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 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대지내 공지의 포장 도면은 전면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대지내 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도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심의위원회 또는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사항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당해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정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에 부합하면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설계상의 보다 나은 착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분	도면 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공공 부문	-	설계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표현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2.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도 3.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의 상세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계획상에 명기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계획 및 설계, 구역별 설계 등 단위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개념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 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Ⅲ. 관계도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S = 1:1,000)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S = 1:1,00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23호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서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훈국

■ 지정 대상 :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지정 기간 : '10. 2. 1 ~ '11. 1. 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 : 581,400천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0. 1. 7 ~ 2010. 1. 14.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편철 후 동일본 총5권 제출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등
- 법인 또는 시설의 정관 1부
-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 기관내의 편의시설 증명서류 등
- 서비스대상자 모니터링 기록지 등

<재지정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월별 바우처결제액, 이용 아동 수 등 2009년도 사업 결과보고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16호]
- 서비스대상자 모니터링 기록지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기 제출과 변경시,
법인 또는 시설의 정관 1부,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기관내의 편의시설 증명
서류 등)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재활복지팀(☎ 560-4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2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단위:명]

19세이상의 주민수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④ (①+②+③)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④×1/40)
내 국 인 (선거권없는자제외) 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②	외 국 인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 ③		
291,766	231	48	292,045	7,302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3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계	291,814	291,766	48	43,773		
검암경서동	19,587	19,581	6		2,918	
연희동	35,392	35,388	4		2,918	
가정1동	10,353	10,351	2		1,553	
가정2동	8,027	8,026	1		1,204	
가정3동	9,606	9,605	1		1,440	
신현원창동	18,867	18,867			2,830	
석남1동	19,868	19,858	10		2,918	
석남2동	14,412	14,411	1		2,162	
석남3동	14,178	14,175	3		2,127	
가좌1동	11,608	11,602	6		1,742	
가좌2동	18,120	18,120			2,718	
가좌3동	17,098	17,095	3		2,565	
가좌4동	10,190	10,188	2		1,529	
검단1동	29,323	29,317	6		2,918	
검단2동	16,376	16,375	1		2,457	
검단3동	15,021	15,021			2,254	
검단4동	23,788	23,786	2		2,918	

※ 산정된 서명인 수 43,773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6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계	84,508	84,499	9	16,902	
		검단1동	29,323	29,317	6		846
		검단2동	16,376	16,375	1		846
		검단3동	15,021	15,021			846
		검단4동	23,788	23,786	2		846
	나선거구	계	54,979	54,969	10	10,996	
		검암경서동	19,587	19,581	6		550
		연희동	35,392	35,388	4		550
	다선거구	계	27,986	27,982	4	5,598	
		가정1동	10,353	10,351	2		280
		가정2동	8,027	8,026	1		280
		가정3동	9,606	9,605	1		280
	라선거구	계	67,325	67,311	14	13,465	
		신현원창동	18,867	18,867			674
		석남1동	19,868	19,858	10		674
		석남2동	14,412	14,411	1		674
		석남3동	14,178	14,175	3		674
	마선거구	계	57,016	57,005	11	11,404	
		가좌1동	11,608	11,602	6		571
		가좌2동	18,120	18,120			571
		가좌3동	17,098	17,095	3		571
		가좌4동	10,190	10,188	2		571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4호

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와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9,2045	29,1766	231	48	24,337(1/12)	

- ※ 내국인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2009. 12. 31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외국인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10년 1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41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안 의견제출 공고

2010년 서구청 뒷길(마실거리) 및 서곶길(국제한의원~공촌4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0. 1. 11 ~ 1.25.
- 의견제출 장소 : 서구청 녹지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의견제출 방법 : 팩스(032-560-4809), 방문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2010.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

도 로 명	시 점	종 점	길 이	비 고
서 곶 길 (심곡사거리↔서구청)	심곡동 248-6 (연희주유소)	심곡동239-1 (제일타이어)	0.58km	※ 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
탁 옥 로 (연희사거리↔서부경찰서)	심곡동 280-3 (준호빌딩)	심곡동280-4 (쌍용빌딩)	50m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상가)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상가)	50m	
서곶길 (400m) (국제한의원~공촌4거리)	연희동 711-13 (국제한의원)	공촌4거리	400m	※ 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
서구청 뒷길 360m (마실거리)	심곡동 244(서구청)	심곡동 242	360m	

2.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

가. 일반적 표시기준

-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2개를 포함 3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 구역 고시기준에 의한다.
- ③ 신축, 개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⑥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나.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

- ①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단,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정면 1층부터 3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가로 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건물 최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세로 최대크기는 100cm 이내로 하며,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1층부터 3층은 50cm이내로 한다.
- ⑥ 보조표시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보조표기내용은 가로간판 세로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① 돌출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우측 모서리 한 곳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는 1줄만 표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은 도로에 접한 각 건물면의 우측모서리에 각각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3m 이상으로, 최상단은 건물 10층 창문선 상단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돌출 간판의 1면의 면적은 업소당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돌출 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마.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1층에 위치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 ② 소형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2m 이상으로, 최상단은 3m 이하에 위치하도록 건물 벽면에 부착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건물별로 통일시킨다.
- ③ 단순한 상호표기는 지양하며,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 ④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같은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으며 같은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1개의 지주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 ①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 ② 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표시기준을 분양(임대)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

- 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설치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

- ② 이 고시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관계법령 과 조례에 의한다.
- ③ 이 고시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설치 기준에 의한다.

5.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 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 물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회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 장학회에서 수행할 주요사업 규정(안 제4조)
- 장학회 재산은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등으로 조성 및 운용함(안 제5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6조)
-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업무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음(안 제9조)
-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함(안 제11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 관계법령 위배 시 장학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13조)
- 장학회 해산 시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 : 032-560-5752, 팩스 : 032-560-4049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와 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3. 우수학생 및 교사 연수 등 지원사업
4.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9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안)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3-128호(1993. 09. 28.)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되고,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4-365호(1994. 12. 28.)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1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시행기간 : 1994. 12. 28 ~ 2010. 03. 27
4.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 ▶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 : A=343,489.9m²

공종별		단위	계획	실적	비고
1.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가. 토 공	절 토	m ²	545,450	545,450	
	성 토	m ²	636,358	636,358	
나. 배 수 공	우 수 관	본	2,861	2,822	
	오 수 관	m	7,530	7,334	
다. 포 장 공	아 스 콘	a	673	656	
	보도블럭	m ²	8,266	8,205	
라. 구조물공	L형옹벽	m	532	532	
마. 상수도공	주 철 관	본	1,620	1,589	
	제 수 변	EA	194	189	
바. 부 대 공	가드레일 등	식	1	1	
2.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식	1	1	
3.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식	1	-	
4.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식	1	1	
5. 기 타		식	1	1	

5. 사업비 정산내역

구분	명칭	금액(천원)	구분	명칭	금액(천원)
수입	계	34,348,261	지출	계	34,348,261
	체비지 매각수입 등	34,348,261		공사비	13,396,880
				보상비	7,420,440
				업무비	2,213,69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3,434
				지중화사업 부담금	2,635,599
				기타	8,588,214

※ 개략사업비이며 관련부서 협의 및 청산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5항과 동일

7.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 관계도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도시개발팀)[☎(032)560-4782]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